제 161 호

행 정 명 령

주 정부 고용기관에 의한 임금 평등 보장

전문: 뉴욕주는 모든 주민의 시민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 리더이다.

공정성을 증진하고, 차별과 싸우며, 모든 사람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주의 정책이다.

모든 뉴욕 주민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책임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연방 및 주 법률에서는 성별에 기초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일에 대해서는 평등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2015 년에 뉴욕주는 고용주가 동일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임금을 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 그리고 피용자가 해고나 정직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서로 그들의 임금에 관해 의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해서, 직장에서 여성의 권리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 법률들을 제정했다.

여성과 인종적 소수자 및 민족적 소수자인 근로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과 급여를 받아왔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만연된 임금 격차를 야기했다.

최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주의 여성은 여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이 받는 임금과 비교할 때, 1 달러 대비 13 센트가 적은 평균 87 센트를 받고 있다.

뉴욕주는 채용되는 피용자의 종전 급여 수준들로부터 반영될 수 있는 불평등을 영속화하지 않을 것이며, 주 정부가 그 임금 결정 시스템에 존재하는 역사적 차별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임금 평등을 증진할 것이다.

그리고, 주 정부에 고용된 구성원들은 반드시 그들의 성별, 인종이나 민족, 종전 고용주 또는 종전의 임금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A. 정의

1. “주 정부기관”은 (i) 주지사가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ii)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을 제외하고, 주지사가 위원장, 최고 책임자, 또는 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익법인, 공적 당국, 이사회 및 위원회를 의미한다.

2. “보수”는 급여, 임금, 수당 및 그 밖의 형태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B. 채용 지원자들을 그들의 특유한 적성과 자격에 기초해서 심사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보수가 포함된 조건부 채용 제안을 받게되는 시점까지는, 어떠한 주 정부기관도 채용 지원자에게 해당 지원자의 현재 보수 또는 종전의 보수 이력을 제공하도록 어떤 형태로든 요청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

C. 일단 조건부 제안이 제시된 경우에는 주 정부기관이 보수 정보를 요청하고 검증할 수 있다.

D. 이 행정명령 시행일 현재 주 정부기관이 이미 지원자의 종전 보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해당 지원자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E. 주지사의 노동관계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이 이 행정명령의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것이며, 이 행정명령의 요건에 대해 주 정부기관의 소관 인사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이다.

F. 여기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보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이 행정명령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어떤 지원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G. 지원자가 보수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것이 채용 결정을 내릴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부적절하게 보수 정보를 요청받은 지원자는 해당 위반사실을 주지사의 노동관계국에 신고할 수 있다.

H.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단체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2017 년 1 월 9 일에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이 명령을 발령한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실장